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다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 집합투자업자 명칭 :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기준일 : 2025년 3월 14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년 3월 21일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788-8400, www.daol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자 요청시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 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5.03.14)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79225)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높은 위험)						다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주식 및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금융투자상품등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증식의 수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100%이하를 시장상황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과 국채·지방채·특수채·회사채 등의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금융투자상품등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증식의 수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에 90%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table border="1"><thead><tr><th>모투자신탁 명칭</th><th>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th></tr></thead><tbody><tr><td>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td><td><주요 투자대상> 주식에 100% 이하, 채권에 100% 이하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가. 시장상황에 따른 주식투자비중 조절을 통한 전략을 구사하고, 실현수익률 중심의 계단식으로 누적수익률을 관리하는 등 주식시장의 장세 변동에 따라 적극적 자산배분 및 전략적 Sector/종목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나. 채권운용은 방어적 성향의 액티브 운용전략을 추구할 계획이며, 신용과 유동성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드레이션은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되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둠</td></tr></tbody></table>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주요 투자대상> 주식에 100% 이하, 채권에 100% 이하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가. 시장상황에 따른 주식투자비중 조절을 통한 전략을 구사하고, 실현수익률 중심의 계단식으로 누적수익률을 관리하는 등 주식시장의 장세 변동에 따라 적극적 자산배분 및 전략적 Sector/종목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나. 채권운용은 방어적 성향의 액티브 운용전략을 추구할 계획이며, 신용과 유동성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드레이션은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되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둠			

* 비교 지수 : **한국종합주가지수 * 60% + 1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40%**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연)							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 형총보 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0.879%	0.342%	1.10%	0.881%	189	282	377	575	1,15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	없음	1.837%	1.30%	1.34%	1.837%	188	360	515	771	1,45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0.987%	0.45%	1.00%	0.987%	101	205	311	533	1,182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지만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종류C의 경우에는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매1년이 되는 때마다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자동전환되며, 그 적용기준 및 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 '전환절차 및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6)총보수·비용 비율은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을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값과 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이후						
			2024/03/05~ 2025/03/04	2023/03/05~ 2025/03/04	2022/03/05~ 2025/03/04	2020/03/05~ 2025/03/04	2008/03/05~ 2025/03/0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	2008-03-05	-	-	-8.46	-1.13	2.13						
	비교지수	2008-03-05	-	-	-4.46	-0.73	1.46						
	수익률 변동성	2008-03-05	15.33	14.34	16.12	19.56	15.97						
(주1)비교지수 : '09.04.30 이전(한국종합주가지수 * 70% + 1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30%), '09.05.01 이후(한국종합주가지수 * 60% + 1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4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에 미설정 또 전부해지된 종류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 해지 후 재설정된 종류의 경우에는 재설정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주5)기재가 생략된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인력 (2025.02. 28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주식형)			운용경 력년수				
				집합투 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우형진	1968년	책임 (본부장)	21개	16,743억	9.99	8.47	-6.22	1.72	23년 1개월
이종찬	1983년	책임 (부장)	18개	1,021억	9.93	8.44	-6.22	1.72	10년
김지성	1989년	부책임 (과장)	19개	11,458억	9.63	8.18	-6.22	1.72	5년 9개월

(주1)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개별 기업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개별 주식 가격의 등락을 초래할 가능성과 개별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시30분 이전2영업일 기준가 매입 · 15시30분 경과후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시30분 이전2영업일 기준가4영업일 지급 · 15시30분 경과후 3영업일 기준가4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C, C2, C3, C4, C5, Ce, Cl, CW, S: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A: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CP, C-P, S-P: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aol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u>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는 퇴직연금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4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4 수익증권을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 또는 환매대금 지급일 등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함 								
집합투자업자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번호: 02-788-8400/ 인터넷홈페이지: www.daolfund.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마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25년 3월 21일	준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p>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종류(Class)</th> <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판매 수수료</td> <td>수수료 선취(A)</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 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 (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 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 (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 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 (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후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후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후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 (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타	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하거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거래자가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daolfund.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daolfund.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7922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792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792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951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951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951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951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792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l)	B61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A138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P7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B61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614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614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주식형)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능)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자금 납입가능)

마. 특수형태 :

- (1)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2)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점점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주) 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7922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792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792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951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951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951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951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792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l)	B61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A138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P7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B61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614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614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 사항
2008.03.05	최초설정
2009.05.01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명칭등의 변경 · KTB액티브자산배분형주식혼합투자신탁 → KTB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010.05.03	판매회사보수 인하
2010.11.15	CDSC적용에 따른 클래스 신설(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및 판매회사보수 정율식 인하
2011.03.03	종류 CW 신설
2011.03.30	종류 CW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2014.02.28	종류 S 신설
2015.07.27	종류 Cl, CP, C-P, S-P 신설

2016.07.02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7.30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 및 환매 기준시점 변경
2016.08.1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민재, 김정희 → 이진우, 김정희)
2016.09.2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진우, 김정희 → 유경신, 김정희)
2016.11.08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및 펀드명 변경
2016.11.2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유경신, 김정희 → 이주호, 김정희)
2018.09.20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주호, 김정희 → 이주호, 우형진)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보수율 변경
2019.03.29	투자위험등급 변경(2등급 → 3등급)
2019.09.16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2019.12.1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이주호, 우형진 → 황준혁, 우형진)
2021.03.24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김지성) 투자위험등급 변경(3등급 → 2등급)
2021.06.30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황준혁, 우형진 → 김용범, 우형진)
2021.08.3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이종찬)
2022.0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펀드 명칭 등 변경 - 집합투자업자 명칭: KTB자산운용주식회사 →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 펀드명칭: KTB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 다올KTB액티브 자산배분형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 홈페이지 주소: www.i-ktb.com → www.daolfund.com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용범, 우형진 → 송종호, 우형진)
2023.03.29	펀드명칭 변경 (다올KTB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2023.06.30	운용전문인력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운용전문인력: 우형진/송종호 → 우형진/이종찬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이종찬/김지성 → 김지성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대표전화 : 02-788-84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2025.02.28 기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국내-혼합주식형)							수	
			집합투자기 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1968년	책임 (본부장)	21개	16,743억	9.99	8.47	-6.22	1.72	23년 1개월
우형진 · 주요 이력: - '01.01~'10.12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채권운용팀 - '11.01~'15.02 하나 UBS 자산운용 채권운용팀 - '15.02~'18.08 현대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본부장 - '18.09~ 현재 다올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본부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국내-혼합주식형)				운용경력년 수	
			집합투자기 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1983년	책임 (부장)	18개	1,021억	9.93	8.44	-6.22	1.72	10년
이종찬 · 주요 이력: - '10.07~'12.08 KB 손해보험 재무팀 - '15.03~'17.09 HDC 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17.09~'19.06 다올자산운용 리서치팀 - '19.06~'21.07 NH-Amundi 자산운용 기업분석팀 - '21.08~ 현재 다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국내-혼합주식형)				운용경력년 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1989년	부책임 (과장)	19개	11,458억	9.63	8.18	-6.22	1.72	5년 9개월
김지성 · 주요 이력: - '15.10~'18.05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 - '18.05~'19.05 한국펀드평가 - '19.06~현재 다올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 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구분	운용 기간
김정희	채권부문	2008년 03월 05일 ~ 2013년 10월 14일
이규현		2013년 10월 15일 ~ 2014년 05월 27일
김정희		2014년 05월 28일 ~ 2018년 09월 19일
우형진		2018년 09월 20일 ~ 현재
안영회	주식부문	2008년 03월 05일 ~ 2013년 10월 14일
곽재우		2013년 10월 15일 ~ 2014년 02월 27일
기호진		2014년 02월 28일 ~ 2014년 06월 24일
최영철		2014년 06월 25일 ~ 2015년 06월 23일
최민재		2015년 06월 24일 ~ 2016년 08월 11일
이진우		2016년 08월 12일 ~ 2016년 09월 28일

유경신		2016년 09월 29일 ~ 2016년 11월 28일
이주호		2016년 11월 29일 ~ 2019년 12월 12일
황준혁		2019년 12월 13일 ~ 2021년 06월 29일
김용범		2021년 06월 30일 ~ 2022년 04월 14일
송종호		2022년 04월 15일 ~ 2023년 6월 29일
이종찬		2023년 6월 30일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구분	운용 기간
김지성	채권부문	2021년 03월 24일 ~ 현재
이종찬	주식부문	2021년 08월 31일 ~ 2023년 6월 29일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 이 투자신탁은 2016년 11월 8일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전 발행된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변경된 투자신탁의 해당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년 이상된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년 이상된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년 이상된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4년 이상된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l)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 (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종류별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하거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거래자가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차이>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 이내	해당사항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0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l)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지급시기	매입시	-	환매시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3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1.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1.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0.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0.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0.50		
수수료미징 구- 온라인(Ce)	최초설정일~2010.11.14			
	2010.11.15~2011.11.14	0.50	0.02	0.017
	2011.11.15~2012.11.14	1.35		
	2012.11.15~2013.11.14	1.213		
	2013.11.15~신탁계약해지	1.0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l)		0.9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4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3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70		
		0.78		
		0.23		

주)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 및 당해 모두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명	모두자신탁명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90% 이상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자투자회사제2호[주식혼합]		90% 이상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자투자회사제3호[주식혼합]		90% 이상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자투자신탁제4호[주식혼합]		9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투자비중
----------	----------------	------

다올액티브 자산배분형증권 모투자신탁 [주식혼합]	<p><주요 투자대상> 주식에 100% 이하, 채권에 100% 이하로 투자하는 투자신탁</p> <p><주요 투자전략></p> <p>가. 시장상황에 따른 주식투자비중 조절을 통한 전략을 구사하고, 실현수익률 중심의 계단식으로 누적수익률을 관리하는 등 주식시장의 장세 변동에 따라 적극적 자산배분 및 전략적 Sector/종목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p> <p>나. 채권운용은 방어적 성향의 액티브 운용전략을 추구할 계획이며, 신용과 유동성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듀레이션은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둠</p>	90% 이상
---	---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주식 및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금융 투자상품등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증식의 수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90% 이상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환매조건부매수	10% 이하	<p>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만기 1년 이내인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및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1)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	주식	100% 이하	지분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②	채권	100% 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⑤	집합투자증권등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5% 이하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⑥	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⑦	파생상품	10% 이하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
⑧	증권 대여 ²⁾	50% 이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⑨	증권 차입 ³⁾	20% 이하	주식, 채권, 어음등,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한 차입허용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주식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①주식의 투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내지 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내지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자세한 투자대상은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

-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 3.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제한〉

(1) 다올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①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② 동일종목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 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 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 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 도성예금증서와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 · 마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 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③)	동일법인 발행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⑤)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⑥)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단,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 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1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⑦)	계열회사 지분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⑧)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투자대상' ⑤ 내지 ⑨, '나. 투자제한' ② 내지 ⑤, ⑥의 (다)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가. 투자대상' ⑦, '나. 투자제한' ②, ④ 및 ⑤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가.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 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 (1)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 및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시장의 장세 변동에 따라 적극적인 자산배분전략 등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성과 비교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한국종합주가지수 * 60% + 1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40%

나.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상을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개별적 위험관리를 통하여 전체적인 위험 관리를 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은 KOSPI의 변동성을 활용하여 주식편입비 조절을 통한 Step by Step 형태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투자대상이 되는 주식과 그 밖에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에 대한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명	투자대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다올액티브 자산배분형증권 모투자신탁 [주식혼합]	주식 100% 이하 / 채권 100% 이하	<p>〈주요투자전략〉</p> <p>(1) 시장상황에 따른 주식투자비중 조절을 통한 전략을 구사하고, 실현수익률 중심의 계단식으로 누적수익률을 관리하는 등 주식시장의 장세 변동에 따라 적극적 자산배분 및 전략적 Sector/종목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p> <p style="text-align: center;">Step by Step 형태의 안정적 성과 추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tr> <th>Step 1</th> <th>Step 2</th> <th>Step 3</th> <th>Step 4</th> </tr> <tr> <td>시장 국면별 적극적인 자산/섹터 배분</td> <td>시장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td> <td>실적 호전 주식의 지속적인 발굴 및 집중 투자</td> <td>Hedging 전략을 통한 실현수익률의 계단식 누적 수익관리</td> </tr> </table> <p>주) Hedging 전략 : KOSPI 선물을 이용하여 시장이 급락할 경우 Portfolio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할 계획임</p> <p>(2)채권운용은 방어적 성향의 액티브 운용전략을 추구할 계획이며, 신용과 유동성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듀레이션은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예정</p> <p>〈위험관리〉</p> <p>(1) CIO 및 전략리서치팀의 경기분석과 시장전망 등에 기초한 Top-Down 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인 자산배분전략을 수립 계획</p> <p>(2) 펀드매니저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Sector Manager(업종별 관리자)제 도를 통한 주간 단위 탄력적</p>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시장 국면별 적극적인 자산/섹터 배분	시장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실적 호전 주식의 지속적인 발굴 및 집중 투자	Hedging 전략을 통한 실현수익률의 계단식 누적 수익관리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시장 국면별 적극적인 자산/섹터 배분	시장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실적 호전 주식의 지속적인 발굴 및 집중 투자	Hedging 전략을 통한 실현수익률의 계단식 누적 수익관리							

		<p>모델포트폴리오 변경으로 단기 시장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계획</p> <p>※ Top-Down 분석은 상위의 개념인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하부의 개념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가는 방식으로 거시경제 분석을 통한 경기전망과 산업분석으로 투자가치와 성장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선정하고 그 섹터 내에서 우수한 종목을 선택하는 분석방법</p>
--	--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 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개별 기업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개별 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할 가능성과 개별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큰 금액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의 범위는 무한대로 이 투자신탁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정치·경제적 상황, 정부정책, 과세제도 등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매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 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및 국내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주식투자의 기본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 42.07%이므로 6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전·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전 위험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02	2등급	2등급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5단계 → 6단계)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 (연환산) : 16.68%
2019.03.29	2등급	3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 (연환산) : 11.34%
2021.03.24	3등급	2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 (연환산) : 22.07%

<다음자산운용주식회사의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위험정도	상세 설명
------	------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산(실질적으로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아파트나 오피스 등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로 투자회수가 용이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 보증하거나 담보가 충분하여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과 동일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 1. 투자위험등급 기준은 다음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가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단,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집합투자기구(ELF, 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97.5% VaR 모형: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합니다.

-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Commodity,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으로 이 중 각 고위험 자산을 기초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후순위 채권, 주권관련사채권 및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투자등급채권 및 투기등급채권의 구분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기준으로 함)
-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 이상), CP(A2-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해지 여부 및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채권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을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10.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11.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2.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3. 상기 분류에 따라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 · 투자대상 · 손실가능성 등에 따라 별도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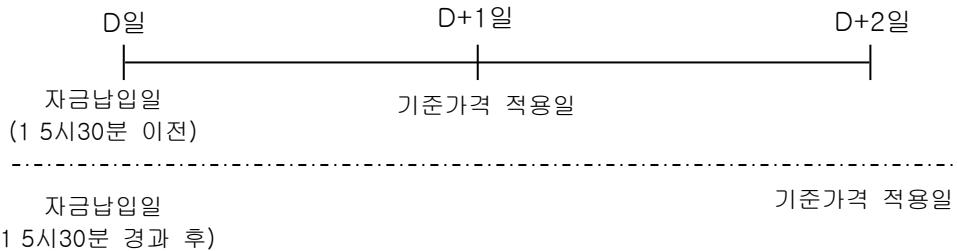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년 이상된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년 이상된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년 이상된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4년 이상된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l)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5시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나) 15시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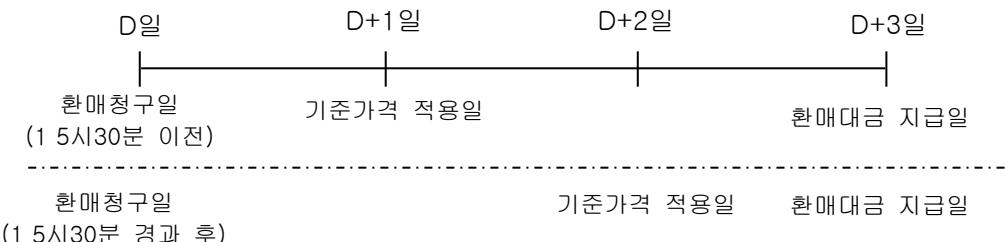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5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 (나) 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 (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라)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환매수수료

잦은 자금유출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환매청구에 따라 보유 증권 등을 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잔류 수익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일정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환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지급비율(%)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l)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토직연금(CP)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지급시기	환매시

주) 1.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2. 신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15시30분[오후 3시30분]이전에 한 경우에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관련법령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관련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구분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¹⁾	중도환매 허용
		O	

주) 1. 이 투자신탁은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환매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환매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3) 환매수수료” 및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환 (장기투자에 따른 클래스 자동전환)

- ① 판매회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 1.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2.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3.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4.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4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4 수익증권을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 또는 환매대금 지급일 등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 ⑤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위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010년 11월 15일 기준 수익자에 대한 수익증권의 전환은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 보유기간에 따라 일괄하여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이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 방법에 따라 전환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 수익증권 간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일의 다음 영업일의 영업개시 전에 공고 및 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text{기준가} = \frac{\text{펀드의 순자산총액}}{\text{총 좌수}}$$

수익증권 매입 및
판매시 거래기준이
되는 가격

$$\text{실제 기준가} = \frac{\text{펀드의 순자산총액}}{\text{총 좌수}} \times 1,000$$

1좌 = 1원
1,000좌 기준 = 1,000원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위의 상장채권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평가 오류 수정에 관한 사항 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 이내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l)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지급시기	매입시	-	환매시

주) 1. 환매수수료 부과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2. 신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3. 후취판매수수료 부과시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등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수수료는 종류 수익증권별 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각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5.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 사 보수	신탁업 자보수	일반 사무 관리 보수	총보 수	기타 비용	총보수 및 비용	동종유 형 총보수	합성 총보 수 및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0.50	0.342		0.02	0.879	0.002	0.881	1.10	0.881	0.4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		1.30		0.017	1.837	0.000	1.837	1.34	1.837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1.10		1.637	0.000	1.637	-	1.637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0.90		1.437	0.000	1.437	-	1.437	0.6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0.70		1.237	0.000	1.237	-	1.237	0.6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0.50		1.037	0.002	1.039	-	1.039	0.4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5~신탁 계약해지	2013.11.	0.45		0.987	0.000	0.987	1.00	0.987	0.5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L)		0.03		0.567	0.000	0.567	-	0.567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00		0.537	0.000	0.537	-	0.537	0.00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35		0.887	0.000	0.887	-	0.887	0.5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0.70		1.237	0.000	1.237	-	1.237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78		1.317	0.000	1.317	-	1.317	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23		0.767	0.000	0.767	-	0.767	0.483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	사유 발생 시	-	-	-	사유 발생 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3. 합성 총보수 비율은 모두자신탁의 기타비용을 자투자신탁이 모두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값과 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4.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모두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자투자신탁이 모두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값과 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이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금융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율을 의미합니다.
7. 미설정된 클래스의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종류C의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8. 종류C의 경우에는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매1년이 되는 때마다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자동전환되며, 그 적용기준 및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의 전환절차 및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 ① 기타비용 종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② 증권거래비용 종류: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③ 금융비용 종류: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원)

구 분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89,312	281,928	376,971	574,834	1,153,84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188,293	360,382	515,407	770,689	1,453,5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01,168	204,926	311,405	533,074	1,181,7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L)	58,118	117,723	178,892	306,234	678,880

<u>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CW)</u>	55,043	111,495	169,427	290,031	642,960
<u>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u>	90,918	184,163	279,854	479,065	1,062,022
<u>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u>	126,793	256,832	390,281	668,098	1,481,084
<u>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u>	134,993	273,442	415,522	711,306	1,576,870
<u>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u>	78,618	159,248	241,993	414,253	918,344

- 주) 1.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총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총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 Ce 는 '13.11.15 가입을 기준으로 각 구간별 판매회사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3. 종류 A 와 종류 C 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 년 1 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종류 C의 경우에는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매1년이 되는 때마다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자동전환됨에 따라 수익자가 종류C 수익증권을 4년 이상 보유한것으로 가정하여 각 구간별 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5. 종류 A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6. 종류 S 는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 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 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총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이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또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와 투자신탁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 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 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 ·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 · 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 · 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분리과세한도	연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가능(2024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 ·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③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세제안내' 참조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15기, 제16기 및 제17기는 회계감사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항 목	제17기	제16기	제15기
	2025.03.04	2024.03.04	2023.03.04
운용자산	1,943,734,064	1,977,084,877	2,076,077,516
유가증권	1,926,793,031	1,957,181,109	2,065,057,41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6,941,033	19,903,768	11,020,10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4,322	6,522	2,788
자산총계	1,943,738,386	1,977,091,399	2,076,080,30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7,858,827	21,206,769	25,657,052
부채총계	27,858,827	21,206,769	25,657,052
원본	1,445,857,170	1,591,063,936	1,770,645,783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470,022,389	364,820,694	279,777,469
자본총계	1,915,879,559	1,955,884,630	2,050,423,252
운용수익	187,009,581	140,877,979	-371,849,278
이자수익	281,985	92,844	112,449
배당수익	27,651,385	21,358,314	26,264,044
매매평가차손익	159,040,475	119,423,665	-398,344,933
기타수익	35,736	3,156	119,162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187,009,581	140,877,979	-371,849,278

-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주식매매가 발생하지 않아 매매회전율 관리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15기 0원, 제16기 0원, 제17기 0원 발생)
- 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15기 0원, 제16기 0원, 제17기 0원 발생)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원, 주, %)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매매회전율(A/B)	
107,913	4,850,707,091	138,357	4,990,726,738	1,745,566,511	285.91

*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활용합니다.

* 매매회전율은 모두자신탁에서 발생한 매매회전율을 자투자신탁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산출된 수치입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원, %)

구분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비율(B/A)		금액(B)	거래비용비율(B/A)
주식	9,842,397,313	9,841,040	0.10	13,359,707,908	13,536,588	0.10
주식 이외의 증권	33,428,143	33,421	0.10	102,167,340	102,155	0.10
장내파생	-	-	-	-	-	-
장외파생	-	-	-	-	-	-
부동산	-	-	-	-	-	-
기타(레포, 대차, 콜 등)	-	-	-	-	-	-
합 계	9,875,825,456	9,874,461	0.10	13,461,875,248	13,638,743	0.10

* 거래비용은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투자신탁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산출된 수치입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항 목	제17기	제16기	제15기
	2025.03.04	2024.03.04	2023.03.04
운용자산	1,943,734,064	1,977,084,877	2,076,077,516
현금및예치금	16,941,033	19,903,768	11,020,100
현금및현금성자산	16,941,033	19,903,768	11,020,100
유가증권	1,926,793,031	1,957,181,109	2,065,057,416
수익증권	1,926,793,031	1,957,181,109	2,065,057,416
기타자산	4,322	6,522	2,788
미수이자	4,322	6,522	2,788
자 산 총 계	1,943,738,386	1,977,091,399	2,076,080,304
기타부채	27,858,827	21,206,769	25,657,052
미지급이익분배금	27,858,827	21,206,769	25,657,052
부 채 총 계	27,858,827	21,206,769	25,657,052
원 본	1,445,857,170	1,591,063,936	1,770,645,783
이익잉여금	470,022,389	364,820,694	279,777,469
자 본 총 계	1,915,879,559	1,955,884,630	2,050,423,252
부채 및 자본 총계	1,943,738,386	1,977,091,399	2,076,080,304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항 목	제17기	제16기	제15기
	2024.03.05 ~ 2025.03.04	2023.03.05 ~ 2024.03.04	2022.03.05 ~ 2023.03.04
운용수익(운용손실)	187,009,581	140,877,979	-371,849,278
투자수익	27,969,106	21,454,314	26,495,655
이자수익	281,985	92,844	112,449
배당금수익	27,651,385	21,358,314	26,264,044
수수료수익	35,736	3,156	119,16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59,462,853	120,745,914	2,738,713
지분증권매매차익	28,067,723	9,140,200	2,738,713
지분증권평가차익	131,395,130	111,605,714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22,378	1,322,249	401,083,646
지분증권매매차손	422,378	1,322,249	136,242,505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264,841,141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187,009,581	140,877,979	-371,849,278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125.33	85.52	-183.1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백만좌, 백만원)

구분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2022/03/05~ 2023/03/04	1,129	1,430	42	47	252	306	922	1,037
	2023/03/05~ 2024/03/04	922	1,033	11	13	103	116	833	993
	2024/03/05~ 2025/03/04	833	991	20	25	75	97	779	1,00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	2022/03/05~ 2023/03/04	40	48	500	500	540	431	0	0
	2023/03/05~ 2024/03/04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2)	2022/03/05~ 2023/03/04	0	0	48	48	0	0	48	43
	2023/03/05~ 2024/03/04	48	43	0	0	48	44	0	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3)	2022/03/05~ 2023/03/04	2	2	0	0	2	2	0	0
	2023/03/05~ 2024/03/04	0	0	44	44	0	0	44	45
	2024/03/05~ 2025/03/04	44	45	0	0	44	49	0	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4)	2022/03/05~ 2023/03/04	0	0	2	2	0	0	2	2
	2023/03/05~ 2024/03/04	2	2	0	0	2	2	0	0
	2024/03/05~ 2025/03/04	0	0	49	49	49	52	0	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5)	2022/03/05~ 2023/03/04	773	971	3	4	77	84	699	779
	2023/03/05~ 2024/03/04	699	779	5	5	76	89	628	743
	2024/03/05~ 2025/03/04	628	742	2	3	73	95	558	71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2022/03/05~ 2023/03/04	183	230	13	15	27	33	169	189
	2023/03/05~ 2024/03/04	169	188	6	7	33	38	142	168
	2024/03/05~ 2025/03/04	142	168	18	24	44	57	116	149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2022/03/05~ 2023/03/04	3	4	2	2	0	0	5	6
	2023/03/05~ 2024/03/04	5	6	0	0	2	3	3	3
	2024/03/05~ 2025/03/04	3	3	0	0	3	3	0	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2022/03/05~ 2023/03/04	10	14	4	5	0	0	14	17
	2023/03/05~ 2024/03/04	14	16	8	10	6	8	15	20
	2024/03/05~ 2025/03/04	15	20	42	59	6	9	52	72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으며,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당해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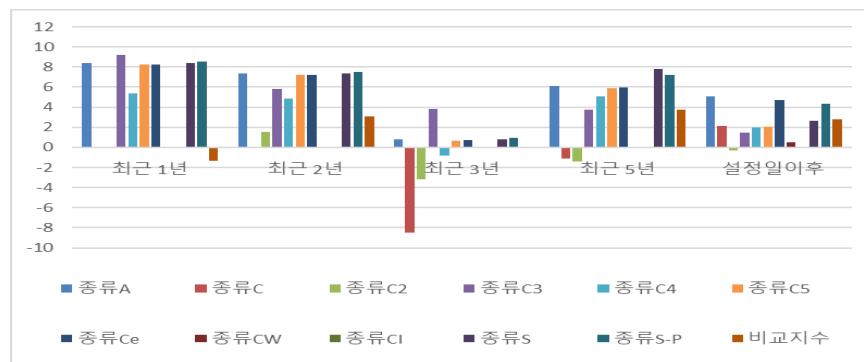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2024/03/05 ~ 2025/03/04	최근 2년 2023/03/05 ~ 2025/03/04	최근 3년 2022/03/05 ~ 2025/03/04	최근 5년 2020/03/05 ~ 2025/03/04	설정일 이후 2008/03/05~ 2025/03/04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8.39	7.37	0.82	6.09	5.0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	-	-	-8.46	-1.13	2.1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2)		1.53	-3.20	-1.40	-0.3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3)	9.22	5.84	3.81	3.78	1.47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4)	5.39	4.83	-0.84	5.11	2.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5)	8.22	7.20	0.66	5.92	2.0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8.27	7.25	0.71	5.98	4.7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CW)	-	-	-	-	0.4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Cl)	-	-	-	-	-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8.38	7.36	0.81	7.84	2.6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8.51	7.49	0.93	7.25	4.31
비교지수	-1.33	3.11	0.08	3.78	2.77
수익률 변동성	15.33	14.34	16.12	19.56	15.97

주) 1. 비교지수 : '09.04.30 이전(한국종합주가지수 * 70% + 1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30%), '09.05.01 이후(한국종합주가지수 * 60% + 1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4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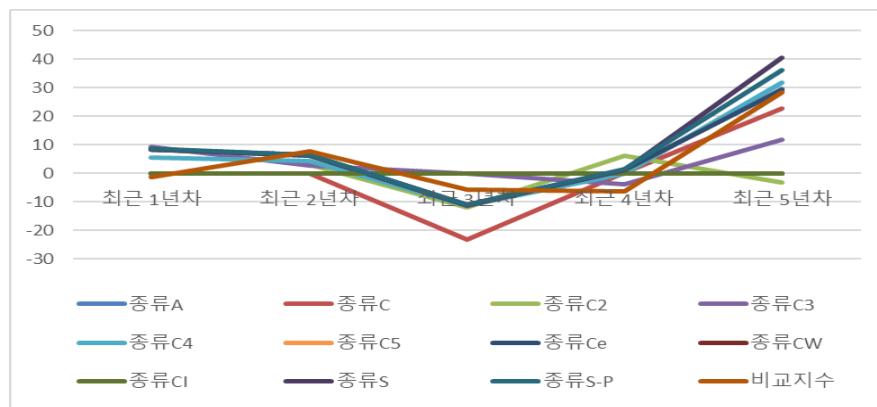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기 간	최근 1년차 2024/03/05 ~ 2025/03/04	최근 2년차 2023/03/05 ~ 2024/03/04	최근 3년차 2022/03/05 ~ 2023/03/04	최근 4년차 2021/03/05 ~ 2022/03/04	최근 5년차 2020/03/05 ~ 2021/03/04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8.39	6.38	-11.13	1.25	29.5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	-	-	-23.30	0.29	22.7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2)		3.08	-12.02	6.19	-3.2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3)	9.22	2.59	-0.15	-3.76	11.8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4)	5.39	4.29	-11.29	-	31.6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5)	8.22	6.21	-11.26	1.09	29.35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8.27	6.26	-11.22	1.14	29.4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CW)	-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Cl)	-	-	-	-	-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8.38	6.37	-11.14	1.24	40.66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8.51	6.50	-11.03	1.36	36.21
비교지수	-1.33	7.76	-5.70	-6.36	28.22

주) 1. 비교지수 : '09.04.30 이전(한국종합주가지수 * 70% + 1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30%), '09.05.01 이후(한국종합주가지수 * 60% + 1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4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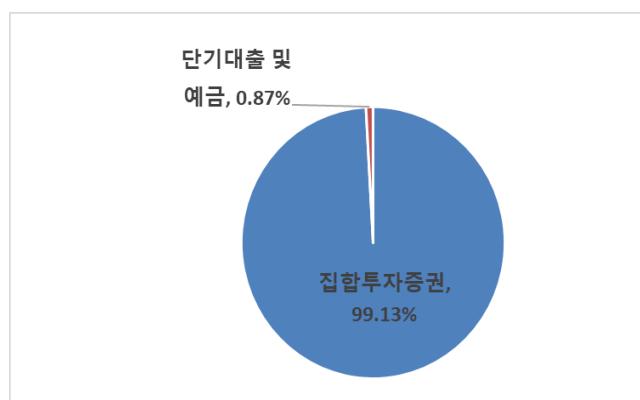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2025.03.04. 기준)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원화	-	-	-	1,927	-	-	-	-	-	17	-	1,944
비중	-	-	-	(99.13)	-	-	-	-	-	(0.87)	-	(100)
합계	-	-	-	1,927	-	-	-	-	-	17	-	1,944
비중	-	-	-	(99.13)	-	-	-	-	-	(0.87)	-	(100)

※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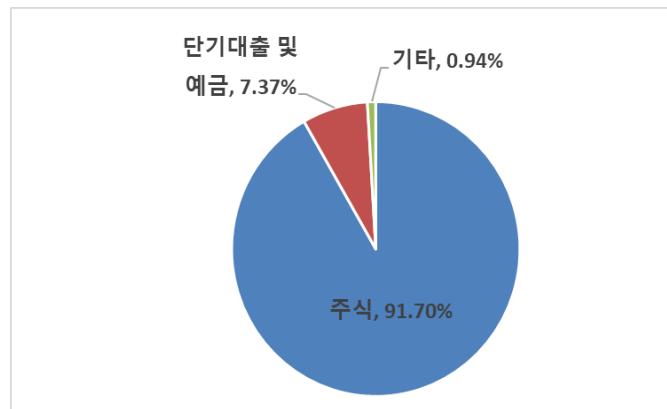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현황〉

다음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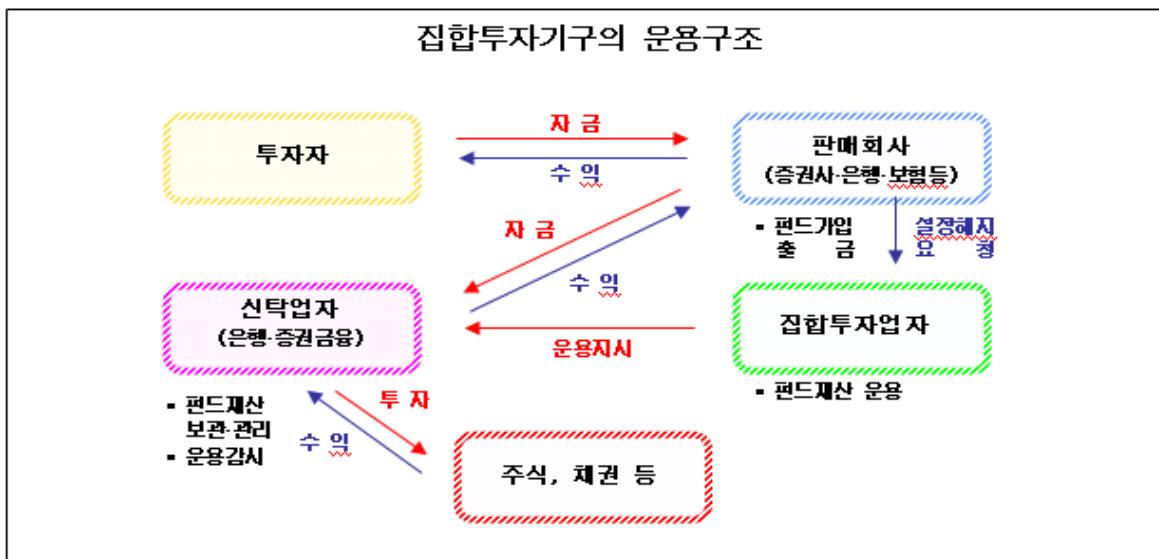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원화	4,620	-	-	-	-	-	-	-	-	371	47	5,039
비중	(91.70)	-	-	-	-	-	-	-	-	(7.37)	(0.94)	(100)
합계	4,620	-	-	-	-	-	-	-	-	371	47	5,039
비중	(91.70)	-	-	-	-	-	-	-	-	(7.37)	(0.94)	(100)

※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연락처 : 02-788-8400, www.daolfund.com)
회사 연혁	1999. 9. 11 회사 설립(자본금 70 억원) 1999. 9. 22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운용회사 등록 2000. 1. 18 자본금 증자(자본금 150 억원) 2000. 1. 28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07. 3. 13 자본금 증자(자본금 153 억원) 2007. 7. 25 자본금 증자(자본금 165.45 억원) 2008. 7. 2 태국증권사 지분취득(6.86%) 2009. 8. 26 자본금 증자(자본금 166.2 억원) 2013. 4. 10 태국증권사 추가 출자(13.45%) 2013. 11. 4 대표이사 조재민 사장 취임 2013. 12. 30 자본금 증자(자본금 216.2 억원) 2014. 11. 04 자본금 증자(자본금 441.2 억원) 2015. 09. 23 자본감자로 인한 자본금 감소(자본금 152.1 억원) 2016. 1. 7 대표이사 김태우 사장 취임 2022. 3. 23 사명변경(KTB 자산운용주식회사 →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2023. 1. 1 대표이사 이창희 사장 취임
자본금	152.1 억원
주요주주현황	다올투자증권(주)(98.62%)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일반사무관리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4.01.01 ~'24.12.31	'23.01.01 ~'23.12.31	계정과목	'24.01.01 ~'24.12.31	'23.01.01 ~'23.12.31
유동자산	49,687	75,076	영업수익	30,218	38,309
고정자산	15,070	10,662	영업비용	45,217	30,651
자산총계	64,757	85,738	영업이익	-14,999	7,658
유동부채	5,517	7,372	영업외수익	706	3,641
고정부채	3,715	4,053	영업외비용	162	1,904
부채총계	9,232	11,425	경상이익	-14,455	9,395
자본금	15,214	15,214	특별이익	-	-
잉여금	40,311	59,389	특별손실	-	-
자본조정	0	0	세전순이익	-14,455	9,395
기타포괄손익	0	-290	법인세비용	-2,693	2,123
자본총계	55,525	74,313	당기순이익	-11,762	7,272

라. 운용자산 규모

(2025.02.28 현재, 단위: 억)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재간접				
수탁고	4,681	11,473	29,876	4,506	7,905	30,971	20,483	21,246	131,141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 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홈페이지 주소	http://www.hanabank.com
회사연혁등	1991.7. 설립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 ①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관련법령 ·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 · 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신탁업자는 위의 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책임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일반사무관리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66 (☎02-6714-4600)
홈페이지 주소	www.kebis.co.kr
회사연혁 등	2003. 4. 1. 설립 2003. 4. 30. 금융감독원 등록

(2)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 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KIS자산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울곡로 88 ☎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 02-3215-140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 02-721-53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3)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는 관련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이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다올자산 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daolfund.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위의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경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펀드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이 투자신탁의 자산 · 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모펀드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 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daolfund.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 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관련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 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준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 및 9 호에서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 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증권거래	주식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를 종합하여, 투자참고 항목(Sector별 Analyst Call, 리서치페이퍼, 기업탐방주선, 세미나, 스팟정보), 브로커능력 항목(매매체결능력, 수도결제능력), 매매수수료 항목(매매시스템의 합리성), 기타 항목(요청자료의 응대 등)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채권 등	분기별 평가점수에 의한 우수 거래증권사, 선물사 순위를 선정하여 거래하며 내부평가 기준에 의한 매니저별 채점방식에 의합니다. 채권의 경우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 거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매매시에 최우선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우선

		으로 합니다.
장내파생	주식관련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프로그램 보유여부,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채권관련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투자참고 항목(리서치, 시황, 세미나),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등을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집합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관련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